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체 육 진 흥 과

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	기연육	일일	2024	1.	2.	2	3.
발	의	자	김근한	의	원	외	10명

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근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4. 2. 23.

발 의 자: 김근한·강승수·김재우·김정도

김춘남·소진혁·신용하·양진오 이상호·장미경·정지원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상위법에 따라 구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며, 가맹 종목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 간에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,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구미시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)

(당초) 보조할 수 있다 → (변경) 보조하여야 한다

나. 인사교류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

- 2) 「스포츠클럽법」 제12조
- 3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2, 제30조의3, 제30조의4
- 4)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6
- 나. 부서검토 : 체육진흥과 의견제출(붙임)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조할 수 있다"를 "보조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,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(인사교류) ①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직원을 가맹 종목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에 파견 또는 상호파견 근무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,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과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하거나 겸임을 적극 추 진하여야 하며, 파견된 직원에게는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(운영비 보조) ① 시장은 제22조(운영비 보조) ① -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 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 조할 수 있다. 조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3조(위탁 운영) ① (생 략) 제23조(위탁 운영) (현행 제1항과 같음) <신 설> 제29조(인사교류) ①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직원을 가맹 종목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에 파견 또는 상호파견 근무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,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과 「구 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 례」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하거 나 겸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

	며, 파견된 직원에게는 업무수
	당을 지급할 수 있다.
<u>제29조</u> ~ <u>제32조</u> (생 략)	<u>제30조</u> ~ <u>제33조</u> (현행 제29조부
	터 제32조까지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①~② (생 략)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정한다.

□「스포츠클럽법」

제12조(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 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에 따 른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지방공무원법」

제30조의2(인사교류) ① (생략)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·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·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다른 기관 간, 해당 시·도와 관할 구역의 시·군· 구 간,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 간, 해당 시·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

- ·군·구와 교육·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·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, 인사교류의 절차,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,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·도의 조례또는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30조의3(겸임)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교육·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- 제30조의4(파견근무)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)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

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·기간·절차와 파 견기간 중의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8조의6(직급보조비)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체육진흥과

조 례 명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검토 사항

- ㅇ 근거 법령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
 - 「스포츠클럽법」 제12조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2, 제30조의3, 제30조의4
 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6

□ 주요 사항

- 안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(제22조)
 (당초) 보조할 수 있다 → (변경) 보조하여야 한다
- 인사교류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)
 - 가맹종목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 간 직원 파견 또는 상호파견
 -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자체 직원 파견 요청 및 겸임 추진(파견 직원 업무 수당 지급)

□ 검토 결과

- ㅇ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
-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유관기관 간 상호 파견 근무할 경우
 양 기관의 업무 추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, 교류 대상 유관 기관의 인사관련 규정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인사교류 여부를 판단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- ㅇ 기대효과 : 유관기관 간 상호 교류로 업무의 유기적 협조 기대
- 소요예산 : 파견 근무로 인한 업무 수당 연 1억 미만
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<u>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u> <u>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</u>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(인사교류) 신설에 따른 파견직원 업무수당 지급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○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파견근무로 인한 업무수당 예산이 소요예산이 1억 미만으로 추계됨.
 - 파견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(6급 이하)
 - · 1명 파견 시 100,000원 × 12개월 = 1,200,000원

4. 작성자

○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김윤미(**☎**054-480-5012)